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10.] [대통령령 제28629호, 2018.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수립하도록 하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구역에서 사행행위영업 등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및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건축법」 및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69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방법,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되는 영업의 종류 및 한옥 바닥면적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제12조제3항 신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공동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구역의 심의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

나.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금지 대상 영업 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건폐율 완화 범위(제16조제3항 신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건축자산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기부채납 등을 통한 건폐율 완화 적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29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전년도"를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해당 연도"를 각각 "연차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연

도의 시행계획을 3월 31일까지"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보전 필요사항"을 "주요 가치 등 보전 필요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제6항 중 "해당 건축위원회"를 "공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19조제1항 중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6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주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마룻면까지의 공간에 설치하는 다락으로서 그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0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2호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